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60
----------	-----

2023년 7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운영회 의원(찬성 50명)
2.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3.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6월 2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운영회 의원)

#### 1. 제안이유

- 최근 직장인, 청소년 등 일반 시민에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마약류의 안전한 취급·관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점검 등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이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를 추가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5조의 제목을 (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으로 함(안 제 5조의 제목)
- 나. 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에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 : 2023. 6. 8.~ 2023. 6. 12.
-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 1 개정안의 취지

- 최근 직장인, 청소년 등 일반 시민에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마약류의 안전한 취급·관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점검 등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 2 개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우선, i) 현행 조례 제5조의 제목을 (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으로 하고(안 제5조의 제목), ii) ‘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의 범위에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치료보호 및 <u>사업 등</u> ) ①	제5조(----- <u>안전관리 사업 등</u> )

<p>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u>안전</u>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p> <p>3. (생략)</p> <p>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u>방지</u>을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p> <p>&lt;신설&gt;</p> <p>5. (생략)</p> <p>② (생략)</p>	<p>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안전</u> ----- ----- -----</p> <p>3. (현행과 같음)</p> <p>4. ----- ----- <u>방지</u> ----- ----- -----</p> <p>5. <u>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나. 개정 취지 검토

1)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의 필요성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i) 마약류 오남용 의심처방, ii)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대리 구매’, iii)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iv) 의료인의 셀프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범죄’가 지속 보도되고 있음. 관련 매체의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관련 여론 동향 >**

발표기관	보도일시	보도내용
SBS <sup>1)</sup>	2023.05.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병원의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소문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병원이 있습니다. 밤새고 줄을 설 정도인데, 문제는 이 약이 마약류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만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여러 꼼수를 동원해 처방해주고 있었습니다.</li> </ul>
SBS <sup>2)</sup>	2023.05.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한 절차나 어려움 없이 처방받은 식욕억제제 한 달 치입니다. 10대들도 이미 이런 약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입니다. '덜구', 즉 대리 구매를 부탁하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SBS가 확인한 10대 마약 투약자 통계 속에는 만 12세의 여자아이가 판매책에게 3만 1천 원을 송금하고 식욕억제제를 집에서 20분 거리 편의점 택배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진통제부터 시작한 10대는 20대에 들어선 약을 구하러 병원 유랑에까지 뛰어들었습니다.</li> </ul>
YTN <sup>3)</sup>	2023.0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년 동안 여러 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씨가 두 번째로 경찰에 나와 스무 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프로포폴과 졸피뎀,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을 병원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처방받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li> </ul>
JTBC <sup>4)</sup>	2023.05.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마약 관련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법 유통 과정에 '의료인'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한 해에 2만 정 가까운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료인을 거친 마약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지만, 관련 행정처분 수위는 자격정지 최대 3개월입니다.</li> </ul>

1) 자료: 김혜민, 2023.05.02., "'살 빼기 성지' 전국에서 몰려드는 곳...마약류 꼼수 처방", S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55272?cds=news\\_edit](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55272?cds=news_edit)

2) 자료: 박준우, 박하정, 여현교, 2023.05.29., "'살 뺀다는 약부터 시작' "택시 타고 관광하듯 마약 샀다" (촬영상) 숨어버린 10대...구조 · 회복 현장은 시간과의 싸움, 출처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09467&plink=ORI&cooper=NAV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09467&plink=ORI&cooper=NAVER)

3) 자료: 윤웅성, 2023.05.17., "'상습 마약' 유아인 밤샘 조사...이번 주 구속 영장 신청 여부 결정",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305171055507412](https://www.ytn.co.kr/_ln/0103_202305171055507412)

4) 자료: 서준석, 2023.05.04., "'마약 통로' 된 의료인들...한 해 2만정 '셀프 처방' 의사도", JTBC,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3470](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3470)

- 개정안은 이처럼 최근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범죄를 방지하고, ‘마약류의 안전한 취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2)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와 관련된 정책 동향

- (서울시 마약 관리 대책-의료용 마약류 점검강화) 지난 4월 13일 서울시는 “과거 유명연예인, 범죄자 등을 중심으로 퍼졌던 마약이 이제는 직장인, 주부, 청소년 등 일반 시민에게 급속하게 확산”되자,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마약 관리 대책」 추진을 발표하였는데<sup>5)</sup>,

그 계획에는 특히 올해 집중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i) 마약류 오남용 의심처방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시-구 합동 방문점검할 예정이며, ii) 서울시 의사회와 협력하여 의료인 대상 마약류 오남용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마약류 과잉처방 방지를 위한 노력도 독려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환자 감시 대폭 강화) 그 후 지난 4월 26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최근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 보다 접근이 용이한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식욕억제제 등을 의료쇼핑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와 의

5) 자료: 이장성, 2023.04.13., “우리 아이들에게 뺏친 마약,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선다”, 세계타임즈, <https://www.thesegeye.com/news/view/1065587191172237>

료쇼핑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sup>6)</sup>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서울시의 마약 관리 대책 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 1) 현행 조례 제5조의 제목을 (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으로 함(안 제5조의 제목).
  - (조문 제목 표시) 먼저,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5조의 제목을 (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으로 하려는 것임.
  - “자치법규의 조문에는 그 조문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조’ 바로 다음에 연이어 괄호를 만들어 ‘제목’을 표시”하는데<sup>7)</sup>,
  - 현행 조례 제5조는 제목을 ‘치료보호 및 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어, 이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업<sup>8)</sup>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대표성 있는 단어나 어절’을 이용해 제목을 변경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며,

6) 자료: 배준열, 2023.04.26., “식약처, 의료용 마약 오남용 처방의사환자 감시 대폭 강화”, 의사신문.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90592](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90592)

7) 자료: 법체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2022. 8.)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346

8)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생략>.

이번 개정안은 ii) 이 조문에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를 추가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려는 내용까지도 함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겠음.

## 2) 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의 범위에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 개정안은 ‘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의 범위에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를 추가하려는 것임.
- 마약류 취급자<sup>9)</sup>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마약류소매업자(약국 개설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를 말하는데,

이 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의료를 목

---

9) 「마약류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중략>.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 9. <생략>.



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음.

-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sup>10)</sup>, “국민 3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간 1,700만 명 이상의 환자에게 9,900만 건 이상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고 있으며, 전체 처방량은 17억 정 정도임”.

<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

	2019	2020
처방기관 수(개소)	39,219	39,630
처방의사 수(명)	101,100	102,727
환자 수(명)	18,502,227	17,475,493
처방건수(건)	99,677,125	99,939,580
처방량(정)	1,682,246,346	1,751,389,585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승인통계(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

- 이러한 의료용 마약류는 “질병의 치료 혹은 고통의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인류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지만, 중독, 과다복용 등 오남용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음.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으로 쓰여야 할 마약류가 불법으로 유출되거나 과다 사용되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sup>11)</sup>.
-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오

10)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2022.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 번호 제13000호, 의안번호 제13841호, 의안번호 제14185호, 의안번호 제14423호, 의안번호 제14557호, 의안번호 제14705호)

11) 유명식(2018),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대한내과학회지 제93권 제4호, 313-316.

남용 우려가 되는 의료기관을 점검하여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등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9월 기준 의료기관 317개소를 점검한 결과 167개소가 적발되었음<sup>12)</sup>”.

<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점검 현황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9.
적발률 (%)	21.5	18.6	38.9	47.8	52.7
점검 (개소)	176	118	293	307	317
적발 (개소)	38	22	114	147	167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에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1조<sup>13)</sup>와 제48조<sup>14)</sup>에서는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에 ‘마약류 감시원’을 두고 있고, 시·도지사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마약류 감시원<sup>15)</sup>’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의 업소나 약국 등에

12)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2022.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제13000호, 의안번호 제13841호, 의안번호 제14185호, 의안번호 제14423호, 의안번호 제14557호, 의안번호 제14705호)

13) 「마약류관리법」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업소 등의 구조·설비·업무현황, 기록한 서류와 의약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
2. 관계인에 대한 질문
3. 마약류·임시마약류·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과 물건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거. 이 경우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다.

② ~ ③ <생략>.

14) 「마약류관리법」 제48조(마약류 감시원) ①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마약류 감시원을 둔다.

② 마약류 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하여 검사(해당 업소 등의 업무현황, 기록한 서류와 의약품)와 수거(마약류·임시마약류·원료물질 등) 등의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3조에 따라, 현재 시·도지사는 마약류 취급자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sup>16)</sup>,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4조<sup>17)</sup>에 따라, 23년 6월 11일부터 특별시장은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이 관리하는 ‘마약류 통합정보<sup>18)</sup>’까지도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됨.

- 
- 15)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17조(마약류 감시원) ①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약학 관련 학과 또는 법학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1년 이상 약무(藥務)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3.>
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
  2.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있는 의약품의 수거
  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지원
- ③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16) 「마약류관리법」 제43조(업무 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7) 「마약류관리법」 제43조(업무 보고 등)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① <중략>.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제41조에 따른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련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4. <생략>.
-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요구 또는 요청한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2023. 6. 11.] 제11조의4

- 이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이 개정안은 입법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 집행기관 의견(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상위법인 「마약류관리법」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제43조(업무보고등)에 마약류 취급 감시 및 단속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음.
- 상위법에 따라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 함으로써 내실 있는 마약류 취급 감시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을 동의함.

18) 「마약류관리법」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승인번호 및 허가·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③ ~ ⑥ <생략>.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2023. 6. 11.] 제11조의4

### 3 종합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쉬운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식욕억제제 등을 의료쇼핑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함.
- 이에,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범죄를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포함 ‘마약류 취급업소의 관리·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서울시가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수거 등의 단속을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것임.
- 우선,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1조, 제43조 및 제48조에서 시·도지사는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으면 ‘마약류 감시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의 업소나 약국 등에 출입하여 검사와 수거 등의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입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겠음.
- 또한, 최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i)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 ii)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대리 구매’, iii)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iv) 의료인의 셀프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범죄’가 지속 보도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에서도 ‘마약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와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서울시의 마약 관리 대책 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6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윤영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병윤,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진혁, 최호정,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50명)

## 1. 제안이유

- 최근 직장인, 청소년 등 일반 시민에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마약류의 안전한 취급·관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점검 등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이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를 추가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5조의 제목을 (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으로 함(안 제5조의 제목)

나. 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에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를 추가 함. (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치료보호 및 사업 등)”을“(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으로 하고, 제1항제2호 중 “안전률”을 “안전율”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방지를”을 “방지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치료보호 및 <u>사업 등</u>) ①</p> <p>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u>안전</u>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p> <p>3. (생 략)</p> <p>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u>방지를</u>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p> <p><u>&lt;신 설&gt;</u></p> <p>5. (생 략)</p> <p>② (생 략)</p>	<p>제5조(----- <u>안전관리 사업 등</u>)</p> <p>①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u>안전</u>을-----</p> <p>-----</p> <p>3. (현행과 같음)</p> <p>4. -----</p> <p>----- <u>방지를</u> -----</p> <p>-----</p> <p>-----</p> <p>5. <u>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